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2월 5일, 서왕진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2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6.2.9.)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2.10.)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2.11.)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2.1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6.2.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왕진의원)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

제에 직면해 있으며, 기후위기, 산업구조 재편,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전환 국면에 놓여 있음. 정부가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치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여건에서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나 단기적인 재정 인센티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어려움. 행정체계 개편과 함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양하고,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이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장과 전환의 과정에서 환경·인권·노동 등 기본권이 함께 고려되는 분권형 국가 전략을 제도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통합하여 정부 직할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자치권한을 갖는 초광역 특별자치단위로 재편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통합특별시를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사회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미래전환도시’로 지정하여, 인공지능(AI)·반도체·재생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환경 보호, 노동의 존엄 및 시민의 기본적 생활 여건이 함께 고려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광주·전남 통합을 단순한 행정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행정통합의 효과가 시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초광역 자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정순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략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건영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